

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운영규정

- 제정 : 1999. 12. 1.
- 개정 : 2011. 6. 23.
- 개정 : 2015. 5. 13.
- 개정 : 2016. 12. 30.
- 개정 : 2019. 3. 1.
- 개정 : 2019. 6. 18.
- 개정 : 2021. 2. 26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와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참여하에 현장애로기술에 대한 산학연 협동을 통하여 기술고도화와 기술창업촉진 및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중소기업청 『중소기업산학협력지원사업(이하 ‘사업’이라 한다) 관련 운영지침』에 의거 관련 사항을 적용 및 준용한다.

제3조(사업)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수행
2. 산업체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
3. 삭제
4. 각종 세미나, 워크숍 및 연구발표회의 개최 등 지원
5. 산학협력지원사업 홍보 및 지원
6. 삭제
7.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
8. 삭제
9. 삭제
10. 산업체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권 지원
11. 기타 본 센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업과 활동

제 2 장 조 직

제4조(소속) 센터는 수원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기구로 둔다.

제5조(센터장) ① 센터의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센터를 대표하고,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행정직원) ① 행정사무처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7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산학협력단 운영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 <개정 : 2021. 2. 26.>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: 2021. 2. 26.>

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며 센터장이 임명한다. <개정 : 2021. 2. 26.>

⑤ <삭제 : 2021. 2.26.>

제8조(운영위원회의 기능)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센터의 기본계획
2. 연구과제의 선정과 연구결과의 평가
3. 자원조성을 위한 계획
4. 재정의 관리운영 및 결산
5. 자체평가 및 감사
6. 기타 센터운영과 관련된 사항

제9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센터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은 본인의 과제와 관련된 사항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 3 장 자문위원회

제10조(자문위원회의 구성) ① 센터에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자문위원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지역 상공인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한다.

④ 원회 간사는 센터장으로 한다.

- 제11조(자문위원회의 기능)** ① 자문위원회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7조의 사항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.
- ② 자문위원회의 운영은 제8조를 준용한다.

제 4 장 재원의 운영관리

제12조(재원) 센터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

1. 정부출연금
2. 지자체 지원금
3. 참여기업 부담금
4. 자체 지원금

제13조(재원의 용도) 재원은 센터가 주관하는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14조(직원) 재원의 조성·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.

제15조(회계) ① 센터의 회계는 센터장이 관장하되 관련기관과 센터의 운영지침에 의한다.

- ② 센터운영자금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1. 각 연구과제에 대한 공동경비
 2. 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행사 및 특별연구과제의 수행
 3. 사무실운영비
 4. 사무원의 인건비
 5. 기타 업무추진비

제16조(결산) ① 제20조 제2항의 최종보고서의 제출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가 감사를 한다.

- ② 연구비사용과 정산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.

제 5 장 연구개발

제17조(연구개발과제) ① 연구개발과제는 참여기업별로 1기업 1과제와 공동연구 다기업과제로 구분한다.

- ② 연구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수는 센터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도출, 참여기업의 합의를 첨부하여 센터에 제출한다.
- ③ 과제별 연구 및 기업과의 연구업무처리는 연구책임자가 주관한다.

8-0-7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운영규정

④ 연구개발활동 중 발생하는 문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센터장이 처리한다.

제18조(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기준) ① 연구개발과제는 매 사업마다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.

② 센터장은 매년 중소기업청에 과제 접수 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
③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기준 및 세부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되 사업지원기관의 평가 기준을 참고한다.

제19조(연구계획의 변경)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의 제목·내용·연구진 등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계획변경서를 센터에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센터장은 연구계획변경서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, 중소기업청 및 참여기업에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제20조(연구개발 자체평가) ①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평가는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.

② 과제별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 종료 후 2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센터에 제출한다.

③ 운영위원회는 연구책임자에게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④ 최종보고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.

1. 과제별 세부 집행내역
2. 과제별 개발결과(요약서)
3. 개발결과 의견서
4. 과제개발 결과보고서

⑤ 연구개발과제의 평가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
제21조(평가결과의 처리) ① 영위원회는 제16조의 결산감사와 제20조의 연구개발 자체평가 결과를 총장·참여기업·경기도·중기청에 보고한다.

② 평가결과 운영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2차년도 계속과제에서 제외된다.

③ 전항의 경우 기준에 매우 미흡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